



제429회국회 (정기회)
제 10차 정무위원회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집단민원 조정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70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입법 필요성	4
2. 제정안의 구성체계	12
3. 제정안에 따른 소요예산	15
4. 정부 의견	16
5. 주요 조문별 검토	17
가. 조정인의 자격요건(안 제6조)	17
나. 조정신청 요건(안 제11조)	20
다.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선임(안 제12조 및 제16조)	22
라. 조정절차의 비공개(안 제25조)	25
마. 조정의 성립 및 효력(안 제26조)	26
바. 집단민원 조정 관련 별도 기관 지정 또는 설립(안 제30조)	29

I. 제안경위

1. 발의자 : 이정문의원 등 14인
2. 발의일 : 2025. 8. 26.
3. 회부일 : 2025. 8.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공공정책 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고,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집단민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해결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조정이라는 민원해결 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민원을 명확히 정의하고, 집단민원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인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통하여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 조정에 필요한 전반적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집단민원”을 행정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함)이나 행정제도로 인하여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집단민원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인을 두도록 함(안 제6조).
- 다. 조정인에게 조정회의의 주재, 집단민원의 조정에 필요한 조사, 조정안의 작성 및 그 밖에 이 법에서 조정인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집단민원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집단민원 대표자로 하여금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집단민원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
- 마.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결정으로써 조정 신청에 앞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과 관계 행정기관등의 동의를 받아 결정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바. 조정신청의 내용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거나 위원회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조정인은 관계 행정기관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단민원의 원인이 된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아.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조정인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하고, 성립한 조정에 대해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안 제26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입법 필요성

□ 제정안은 공공정책 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갈등이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조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단민원의 조정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으며,¹⁾ 그 중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²⁾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 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중 5세대 이상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이하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이라 함)을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³⁾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가 조정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⁴⁾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고충민원 중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조정 건수와 조정 성립률 또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조정 성립률의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2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하여는,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조정에 관한 조사 및 절차를 추진할 조정인의 부재 등 전문적·효율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⁵⁾

[표 1] 최근 5년간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접수 및 조정 성립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8월말 기준)
접수 건수(A)	310	317	384	407	282
조정 건수(B)	41	33	63	81	49
조정 성립률 (B/A)	13.2	10.4	16.4	19.9	17.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3)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조(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① 영 제18조제1호에서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 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을 말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조(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③ 민원과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의 조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고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합의·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집단민원 담당 조사관이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개별 사안의 조정 성립 여부가 조사관 개인역량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

□ 이에, 제정안은 100명 이상 다수인이 관련되어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는 집단민원이 “조정”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은 이해관계자 및 관련 행정기관등이 많고 사안이 복잡하여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⁶⁾ 이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게 되는데, 제정안은 중립적인 제3자(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이에 따른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정안에 따른 조정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무용한 소송절차를 방지하여 분쟁해결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외 별도 법 제정의 필요성 및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체계와의 관계 정립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도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의 조정

6)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공동 실시)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 100인 이상 집단민원은 1,190건으로 집계되었음.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동 제도의 보완을 위하여는 부패방지권익 위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별도의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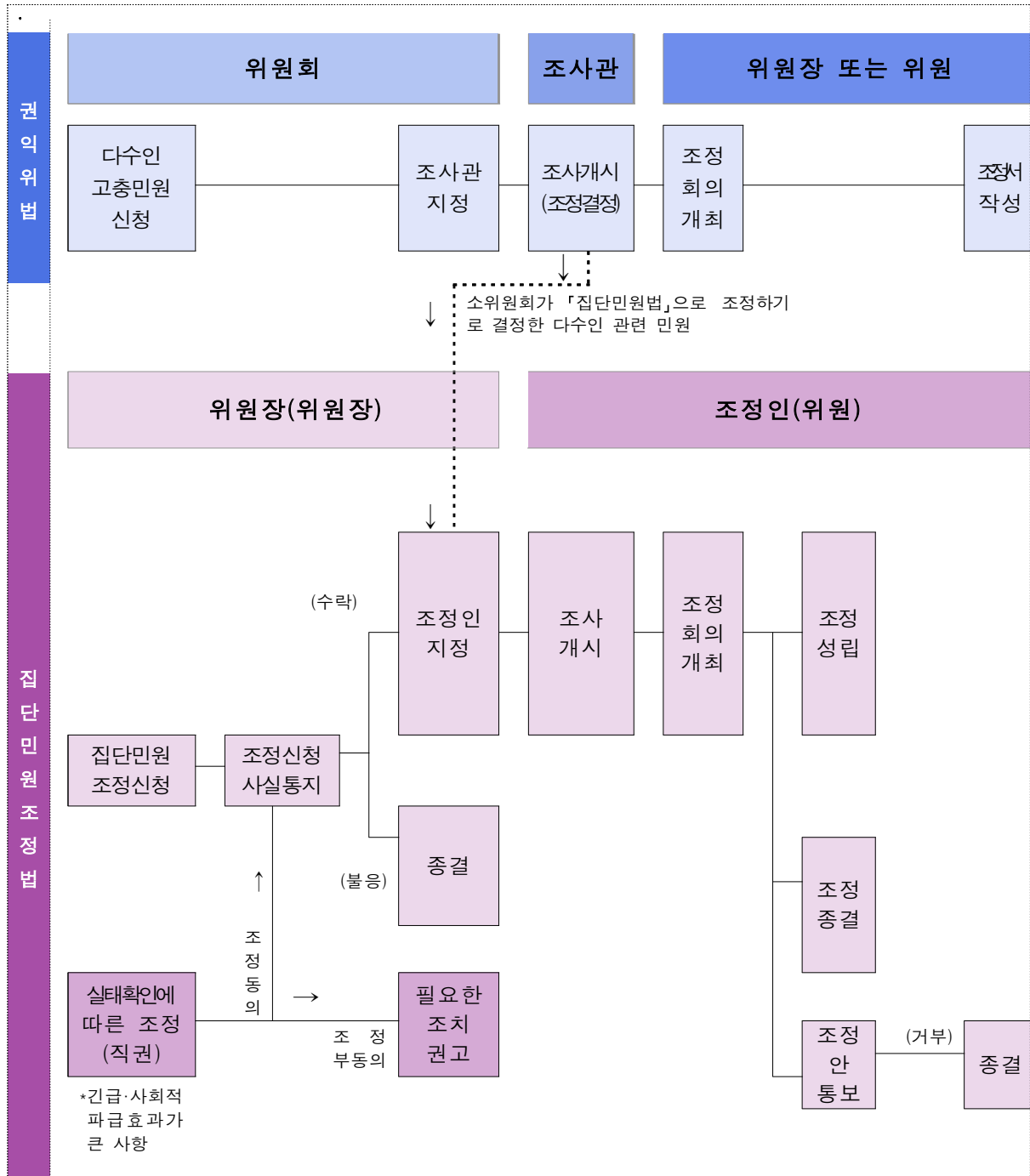
-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은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의 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관한 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 제정안은 현행법령에 따른 조정 제도와 비교하여, 집단민원 대상 범위, 집단민원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인 유무 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조정 절차 등의 내용 등에 있어서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측면에서, 조정인 임명·위촉의 근거 마련 등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표 2]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조정”과 제정안의 “조정” 비교

구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안
조정 대상	고충민원 ⁷⁾ 중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 * 5세대 이상의 공동 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	민원인이 100인 이상인 집단민원 ⁸⁾
조정 관련 업무 수행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담당 직원	조정인 (조정 관련 업무 종사자, 법률 전문가, 대학·연구기관 종사자 등)

* 그 밖에, 집단민원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신청서 기재사항, 조사 방법 등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과 사실상 동일함.

[표 3] 제정안에 따른 조정 흐름도



7) <고충민원과 집단민원 정의>

고충민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집단민원 (제정안)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소극적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체도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국민에게 불편·부담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포함)	행정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이나 행정체도로 인하여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둘째, 현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⁸⁾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갈등의 예방 및 관리 연구를 위한 연구기관을 지정·운영 하도록 하고 있는바,⁹⁾

제정안에 따른 집단민원 조정, 집단민원의 예방 시책 및 연구는 국무 조정실의 공공갈등관리 기능·역할과 중복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작용,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100인 이상의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러한 집단민원은

8)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제16조(갈등조정협의회)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제19조에 따른 의장 1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19조(의장의 선임)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갈등의 예방·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보급

3.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사안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 기관간 기능과 역할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3] 제정안에 따른 “조정”과 갈등조정협의회 비교

구 분	집단민원 조정	갈등조정협의회
대 상	집단민원 중 민원인 100인 이상 연명하여 신청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재	조정인 (국민권익위원장이 임명·위촉)	의장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선정)
참여인	민원인, 행정기관등,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해관계인,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

□ 그 밖에, 제정안을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각 부처·분야별로 소관 행정기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형 분쟁 조정기구 및 행정쟁송절차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와 그 기능 및 역할이 중복·충돌되지 않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집단민원 이송 근거, 타 권리구제절차 제기 시 국민권익위원회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별 법률에서는 각 부처·분야별로 소관 행정기관 내에 분쟁조정 위원회 등 행정형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 중에 있는데,¹⁰⁾

10)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상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동 분쟁조정기구는 주로 민간 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기관등과 민원인 간의 분쟁을 대상을 하는 제정안과 차이가 있으나, 행정기관등의 행정작용을 매개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대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민원의 신청 내용에 따라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은 조정신청의 내용이 “이 법에 따른 조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20조제1항제9호) 하고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경우”에는 신청된 집단민원을 이송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정안은 권리구제절차의 중복·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법령에 따른 조정 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이송 또는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집단민원 신청 이후 이러한 불복절차 또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고려하여, 행정기관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¹¹⁾

11) 고충민원의 경우 제정안과 동일한 이송 또는 각하 사유를 규정하면서,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불복절차 또는 조정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집단민원을 조정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정인, 조정신청 요건, 조정절차,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6개의 장, 36개의 조문의 본칙과 1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총칙)은 총 5개의 조문으로 “집단민원” 등 용어의 정의, 집단민원과 관련된 행정기관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정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2장(조정인)부터 제5장(조정의 성립 및 효력)까지는 총 25개의 조문으로, 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조정인에 관한 사항, 조정신청·조정절차의 진행·조정의 성립과 효력·조정의 종결과 이행여부 확인 등 집단민원 조정절차 전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제2장(조정인, 총 5개 조문)은 조정인의 업무 범위, 자격 및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에 관하여,
- 제3장(집단민원의 신청, 총 10개 조문)은 조정신청의 요건 및 신청인 자격, 집단민원 대표자의 권한, 대리인 선임 근거, 조정신청에 대한 각하 또는 이송 결정 등에 관하여,
- 제4장(조정절차의 진행, 총 5개 조문)은 조정절차를 주재할 조정인의 지정, 조정회의 및 실무회의체 운영, 조정을 위한 조사 등에 관하여,
- 제5장(조정의 성립 및 효력, 총 5개 조문)은 조정의 성립 및 효력,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의 종결 절차, 조정결과의 이행 여부 점검, 집단민원 예방 및 연구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제6장(보칙 및 벌칙)은 총 6개의 조문으로, 조정절차에 관한 위임 근거, 벌칙 적용에 있어 조정인의 공무원 의제, 벌칙 및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3] 제정안의 구성체계

구 분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정 목적(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
제2조	정의	용어 정의(집단민원, 당사자 등)
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	조정절차 등에 관한 책무 등
제4조	행정기관등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타 법 우선 적용
제2장 조정인		
제6조	조정인	조정인의 자격, 임기 등
제7조	조정인의 업무	조정회의 주재, 조정안의 작성 등
제8조	결격사유	조정인 결격사유
제9조	신분보장	조정인 신분보장
제10조	조정인의 제척 등	조정인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
제3장 집단민원의 조정신청 등		
제11조	조정신청의 요건	민원인이 100인 이상 등
제12조	집단민원 대표자	3인 이하 선정, 대표자의 권한 등
제13조	조정신청	신청서 기재사항 등
제14조	조정신청의 보완 등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 등
제15조	조정신청 사실의 통지	

구 분	제정안	
제16조	대리인	집단민원 대표자의 대리인 선임
제17조	조정 참가	집단민원 이해관계인의 조정 참가
제18조	고충민원의 조정	조정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조정절차 진행 등
제19조	실태조사에 따른 조정	
제20조	조정신청의 이송	집단민원의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
제4장 조정절차의 진행		
제21조	조정인의 지정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제22조	조정회의 등	
제23조	조정을 위한 조사	
제24조	관계 행정기관등의 협조	
제25조	조정절차의 비공개	조정절차 비공개 원칙
제5장 조정의 성립 및 효력		
제26조	조정의 성립	조정의 성립 및 효력
제27조	조정의 종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종결
제28조	조정결과의 이행 등	조정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점검 등
제29조	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조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제30조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연구 등	집단민원 조정에 관한 역량 강화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1조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정보의 보호	조정에 관한 정보의 유출 방지 노력 의무
제32조	비밀누설의 금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부과
제33조	권한의 위임	위원회 →위원장 위임 근거 마련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 있어 조정인의 공무원 의제
제35조	벌칙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제36조	과태료	조정절차 비협조 행위
부 칙		
시행일	공포 후 1년	

3. 제정안에 따른 소요예산¹²⁾

□ 제정안에 따른 경우,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정인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정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 회의 참석수당, 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따른 사례비 등을 고려할 때, 추가재정소요는 연 평균 약 12억 1,000만원(5년 간 약 60억 5,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계함.

[표 4] 조정인 제도 도입 시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조정인 제도 도입	조정수당	756	756	756	756	756	3,780
	회의참석수당	227	227	227	227	227	1,135
	용역제공 사례금	227	227	227	227	227	1,135
	합계	1,210	1,210	1,210	1,210	1,210	6,050

주: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또한,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집단민원 조정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 및 교육훈련

12)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참조.

프로그램의 개발 등과 함께 이를 추진할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용역비, 교육 관련 예산, 기관 설립 등에 관한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실태조사 등의 대상·범위, 별도 기관의 지정 또는 설립 등을 추정할 수 없어 합리적 추계가 불가능하다고 함.

4. 정부 의견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의 일환으로 집단민원을 조정하고 있으나, 현재 집단민원을 원활히 조정·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으므로, 원활한 집단민원 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하여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5.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조정인의 자격요건(안 제6조)

-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조정인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당연직)과 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민권익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한편, 국민권익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조정인에게는 일정 기간 ①조정과 관련된 업무나 ②판사, 검사 등 법조 경력 또는 ③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 종사 경력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제 정 안

제6조(조정인) ① 집단민원의 조정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조정인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

2. 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행정기관등 또는 민간분야에서 조정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 정 안

라. 특정 분야의 조정사안에 대하여 조정인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조정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조정인은 위원회 위원의 직위에 있는 동안, 제2항제2호라목의 조정인은 해당 조정사안의 조정이 종결될 때까지 조정인의 지위를 가진다.

④ 그 밖에 조정인의 임명 ·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정인은 조정에 필요한 조사, 조정회의 주재, 조정안의 작성 등 조정절차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특히 조정인의 전문성은 조정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신뢰 증진 및 성공적인 조정 성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조정 대상이 되는 사안에서 조정인의 전문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현행 행정형 ADR 기관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은 이를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 법조인, 대학 또는 연구기관 종사자, 조정 대상 분야의 전문가 등을 조정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¹³⁾

□ 제정안도 법조인, 대학 등 종사자 등을 조정인의 자격요건으로 규

13) 예를 들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경우, “7.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위원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정하고 있으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력 기간 등을 규정하지 않고, “조정인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만 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위촉되는 조정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 분야의 조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의 경력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정안은 “민간분야에서 조정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도 조정인의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통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자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제정안에 따른 조정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제도 등 행정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바, 행정 영역의 조정에 있어서는 법률적합성 원칙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사법(私法) 영역과 차이가 있으므로 민간분야 조정 경력자를 조정인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나. 조정신청 요건(안 제11조)

- 제정안은 조정신청의 요건으로 ①집단민원의 조정신청을 하려는 민원인이 100인 이상이고, ②조정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1조(조정신청의 요건) ① 집단민원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집단민원의 조정신청을 하려는 민원인이 100인 이상일 것. 다만, 집단민원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이 법에 따른 조정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② 집단민원의 조정신청이 있는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조정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집단민원의 조정신청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정안은 집단민원 중 이 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민원인이 100인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인의 규모를 낮게 정할 경우에는 과도한 조정 신청으로 인하여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지나치게 상향할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협소해져 국민
권익보호라는 당초 법 제정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인력 규모, 고충민원 중 다수인 관련 민원의 신청
현황, 타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적정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전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따르면 신청인이 100인 이상인
고충민원은 연평균 약 1,500건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수인 관련 분쟁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타 법률 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다수인관련분쟁을 100명
이상을,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집단분쟁을 50명
이상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6] 신청 민원인 규모에 따른 고충민원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신청 민원인	5명 ~ 99명	5,389	5,462	5,061	4,236	3,583	4,746
	100명 이상	1,687	1,759	1,572	1,389	1,190	1,519
계		7,076	7,221	6,633	5,625	4,773	6,265

주: 100인 이상 연명을 요건으로 하는 집단민원 조정 체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계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잠재적 조정신청 수요를 감안하면 신청 건수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보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다.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선임(안 제12조 및 제16조)

- 제정안은 집단민원 조정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조정에 관한 행위는 집단민원 대표자를 통하여만 할 수 있으며, 집단민원 대표자나 행정기관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2조(집단민원 대표자) ① 집단민원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해당 민원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이하 “집단민원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집단민원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단민원의 대표자를 3명을 초과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집단민원의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라 집단민원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집단민원 대표자는 해당 집단민원의 다른 민원인을 위하여 해당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집단민원의 취하는 해당 집단민원의 다른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민원인은 집단민원 대표자를 통하여만 해당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집단민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집단민원 대표자는 이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대리인) ① 집단민원 대표자나 행정기관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 정 안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③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제정안에 따른 조정 대상이 되는 집단민원은 적어도 100인 이상의 민원인이 관련된 사안이므로, 집단민원 조정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조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집단민원 대표자를 선정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 따르면 집단민원 대표자는 집단민원의 취하를 제외하고는 다른 민원인의 동의 절차 없이 모든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바, 선정된 대표자의 자의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조정안의 수락에 대해서도 다른 민원인의 동의를 얻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선정된 대표자에게 조정 신청의 철회뿐만 아니라 조정의 합의에 대해서도 다른 신청인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¹⁴⁾

14)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선정대표자)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제50조제1항에 따른 합의 및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또한, 제정안은 집단민원의 대표자나 행정기관등이 조정과정을 진행하면서 외부 전문가 등의 조력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복잡한 조정 사안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제정안은 대리인의 자격을 서면으로 소명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대리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고충민원의 처리 실무례 및 다른 입법례¹⁵⁾를 참고하여 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행정기관등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실제 조정과정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행정기관등의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5)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라. 조정절차의 비공개(안 제25조)

□ 제정안은 조정의 절차는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5조(조정절차의 비공개) 조정의 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조정과정에서 당사자와 조정인이 외부개입 우려 없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조정절차에서 논의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제정안은 조정절차의 비공개를 원칙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 조정절차의 공개 또는 방청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또는 방청을 허용하려는 경우, 그 요건, 절차 및 결정 주체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대다수의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도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 등으로 조정절차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¹⁶⁾

16)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마. 조정의 성립 및 효력(안 제26조)

- 제정안에 따른 ‘조정’은 행정기관등과 민원인 대표자(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이 기재된 조정서에 당사자와 조정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이 경우 당사자 간 조정서의 내용은 「민법」상 화해¹⁷⁾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6조(조정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조정인(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수의 조정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화해”는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만, 「민법」상 화해에는 이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음.

17)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구분

- **민법상 화해**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집행력 및 확정력이 없음** (예: 건축분쟁조정, 하천수 분쟁조정 등)
- **재판상 화해**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다룰 수 없음 (예: 공정거래분쟁조정, 의료분쟁조정, 저작권분쟁조정 등)
 - 당사자가 불이행시 「대법원규칙」(제1768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절차가** 개시

□ 제정안은, 재판상 화해는 행정기관등이 그 조정서의 내용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조정 성립의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정기구의 중립성과 절차적 공정성 및 신뢰성이 소송절차에 준할 정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정안에 따른 조정에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됨.

□ 다만, 「민법」상 화해는 재판상 화해와 달리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뿐이어서, 조정서상의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시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정의 내용에 따른 양 당사자의 의무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⁸⁾

18)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행정기관등은 조정서상의 내용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확약의 법리에 따라 성립된 조정서상의 내용에 대하여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의견이나, 이에 따르더라도 조정서상 민원인의 의무 이행을 확보할 방안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제정안은 집단민원 조정의 처리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①사법상 청구권은 재판상 청구, 법률상 규정 등 일정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고, ②행정쟁송절차는 일정한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쟁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소기간을 두고 있어,¹⁹⁾

집단민원의 조정절차가 조정의 성립 또는 종결 없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제소기간 도과 등으로 인하여 다른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집단민원 조정절차 진행 중 민원인이 조정절차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밖에 없게 되므로,²⁰⁾

집단민원 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민원인이 강구할 수 있는 다른 권리구제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집단민원 조정신청의 적절한 처리 시한을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¹⁾

19)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음.

20) 제정안은 다른 권리구제수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집단민원 조정신청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어, 집단민원 조정절차 진행 중 다른 권리구제수단에 의한 불복절차 등을 개시하게 되는 경우 집단민원 조정절차는 종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1)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1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집단민원 조정 관련 별도 기관 지정 또는 설립(안 제30조)

- 제정안은 권익위가 집단민원의 조정과 관련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조정전문가의 교육·양성, 조정기법 개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0조(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연구 등) ① 위원회는 집단민원의 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 및 연구 2. 집단민원 조정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 3. 집단민원의 조정기법 및 이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 이는 집단민원 및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조정인의 분쟁해결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집단민원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그 분야별로 조정기법도 다양하게 요구될 수 있는바,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은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각 분야별로 이미 설립

되어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24개 기관) 등을 통해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별도 연구기관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²⁾

문 의 처
02)6788-5112

2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